

『(재)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(재)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5,000백만원
 - 출연 필요성
 -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수도권 명문학교 면학환경 조성으로 구미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
 - 출연근거법령
 -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2016년도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932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17억 2천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,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5,000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수도권 명문학교 면학환경 조성으로 구미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